

장례식장 식사 및 수육 규격서

1. 조문객 제공 음식(주계약 품목)

품목	규격	단위	예정수량	비고
식사류	- 밥, 국 - 육 개 장 - 시래기국	인분	20,000	반찬4종 포함
사태수육 (삼겹/목살/발목살)	600g	근	5,000	쌈장, 새우젓 포함

2. 내부재물(제단 상차림으로 병원의 요청에 의해 납품)

구분	품목	비고
상식	밥, 국, 물, 조기구이, 나물5종	
발인제	수육(2근), 조기구이, 전, 나물5종	
- 나물 5종 : 콩나물, 무,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 밥은 백미로 하고 국은 탕국으로 한다.		

3. 외부재물(발인 후 상주의 요청에 의한 납품)

구분	품목	비고
신산제	제단세트, 명태포, 오징어, 대추, 밥	
개토제		
평토제	제단세트, 밥, 대추, 꽃감5개, 배3개, 사과3개,	
노 제	제물떡, 유과, 수박, 바나나, 수육, 모듬전,	
반혼제	나물3종, 탕, 밥, 생선1마리, 건어포, 오징어,	
삼우제	가오리, 문어, 건홍합, 명태포	
화장제	제단세트, 명태포, 오징어, 문어, 대추, 밥,	
탈상제	꽃감 3개, 사과3개, 배3개, 바나나, 제물떡, 유과	
- 제단세트 : 막걸리2병, 초2개, 향1개, 젓가락, 종이컵, 접시세트		

대한적십자사 거창적십자병원 재무원

장례식장 떡류 규격서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비고
기정떡	1되	되	각 170	3되/1BOX
시루떡	1되	되		
인절미	1되	되		
꿀떡	1되	되		

대한적십자사 거창적십자병원 재무원

장례식장 과일류 규격서

품목	규격	단위	비고
수박	통	통	
포도	5kg	kg	BOX
방울토마토	2kg	kg	
밀감	5kg,10kg	kg	
오렌지	10kg,20kg	kg	

대한적십자사 거창적십자병원 재무원

장례식장 부침개류 규격서

품목	규격	단위	예상수량	비고
모듬전	4kg (산적/명태/동그랑땡)	Kg	157	4kg/1BOX

대한적십자사 거창적십자병원 재무원

장례식장 장의차량 규격서

품목명	품명	규격	단위	비고
장의차량 위탁	버스	35인승	대	
	리무진	5인승 (링컨리무진)		
	리무진	2인승 (투리스모리무진)		

대한적십자사 거창적십자병원 재무원

장례식장 견어물 규격서

구분	품 명	규 격	단위	예상수량	비 고
1	문어	시세규격품	마리	170	
2	가오리	시세규격품	마리	170	
3	견어포	시세규격품	마리	170	
4	오징어	시세규격품	마리	170	
5	견명태	시세규격품	마리	170	
6	대추	날개40~50개 묶음포장	개	170	
7	알밤	날개20~25개 묶음포장	개	170	
8	곶감	날개5개 묶음포장	개	170	
9	유과	날개4개 묶음포장	개	170	
10	약과	날개10개 묶음포장	개	170	
합 계				1,700	

대한적십자사 거창적십자병원 재무원

장례식장 음식류(식사 및 수육) 위탁공급 계약조건

거창적십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례식장 음식류 위탁공급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병원”은 장례식장 음식류(식사 및 수육) 공급을 “위탁자”에게 위탁하고 “위탁자”은 수탁하여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쌍방 간 계약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공급처) 공급처는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91 거창적십자병원 장례식장(국화원)으로 한다.

제3조 (계약의 내용) ① “위탁자”이 위탁 공급하는 음식류의 품목은 아래 각 호에 의해 제공하며, 제공 가격은 병원에 비치된 “접견실 음식류 가격표”에 의한다.

가. 주계약 품목(조문객 제공 음식)

품 명	규 격	단 위	예정수량	수수료	비고
식사류	·육개장 ·시래기국	인분	20,000		반찬4종
사태수육	600g	근	5,000		쌈장·새우젓 포함
- 수육 주문 최소 주문단위는 5근 기준 - 식사류 최소 주문단위는 20인분 기준					

나 내부재물(제단 상차림으로 병원의 요청에 의해 납품)

(단위 : 원)

제공구분	제공내용	비고
상식	밥, 국, 물, 조기구이, 나물5종	
발인제	수육(2근), 조기구이, 전, 나물5종	
- 나물 5종 : 콩나물, 무,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 밥은 백미로 하고 국은 탕국으로 한다. - 병원은 매월 말 납품된 내부 제물에 대한 대금은 정산하여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다.		

다. 외부제물(발인 후 상주의 요청에 의한 납품)

제공구분	제공내용	수수료
신산제	제단세트, 명태포, 오징어, 대추, 밤	판매금액의 %
개토제		
평토제	제단세트, 밤, 대추, 꽃감5개, 배3개, 사과3개, 제물떡, 유과, 수박, 바나나, 수육, 모듬전, 나물3종, 탕, 밥, 생선1마리, 건어포, 오징어, 가오리, 문어, 건홍합, 명태포	
노제		
반혼제		
삼우제		
화장제	제단세트, 명태포, 오징어, 문어, 대추, 밤, 꽃감 3개, 사과3개, 배3개, 바나나, 제물떡, 유과	
탈상제		
- 제단세트 : 막걸리2병, 초2개, 향1개, 젓가락, 종이컵, 접시세트 - 과일, 건어물은 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병원과 사전 협의)		

③ “가”호의 위탁공급품목 및 가격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병원”과 “위탁자”는 사전 협의를 거쳐 서면에 의하여 결정한다.

- ④ “가”호 및 “다”호 대하여 “위탁자”는 “병원”에게 해당 장례가 완료된 정산 내역서를 첨부 하여 15일 이내에 수수료를 지급 한다. 이때 수수료는 지정계좌 입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⑤ “나”호 대하여 “병원”은 음식물 제공에 따른 대금 정산 후 본 계약 제7조에 의거 “위탁자”에 지불한다.
- ⑥ 가”호 및 “다”호의 판매 가격은 “병원”과 “위탁자”의 상호 협의 하에 설정하고 변경 시 사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수급상황 및 주변 시세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고가 판매를 통한 폭리 또는 현저한 저가 판매를 통한 납품제물의 품질 저하가 발생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⑦ 위탁 음식물은 상주의 선택에 의하며 “권유” “강매”등 상주에게 구입을 독려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해당 행위 적발 시 “병원”은 본 계약 조건 제18조에 의한 계약해지 및 해당 건으로 병원의 손해 발생 시 제19조에 의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 (계약기간) ①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병원”은 차기 위탁 계약 시까지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는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품목을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보증금 처리) ① “위탁자”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본 공고 18조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은 “병원”에게 귀속한다.
 ② “위탁자”이 납부한 계약보증금(현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6조 (수납 및 위탁수수료) ① 본 계약 제3조1항 “가”호 및 “다”호 위탁 물품의 매출액 일체는 “위탁자”가 상주에 수납하여야 하며, 매출내역은 물품공급 장부를 비치하여 유족의 확인 및 서명을 통해 병원으로부터 공급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매출액 수납에 있어 상시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현금 거래를 유도해서는 아니된다. 또한, 휴대용 카드리더기 등을 구비하여 현장 카드결제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현금으로 수납이 이루어질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7조 (대금의 청구와 지급) ① “병원”은 발인일을 기준으로 제3조 1항 “가”호 및 “다호” 위탁수수료를 확정하여 “위탁자”에게 위탁수수료를 청구 하고 “위탁자”는 제3조 4항에 의거 수수료는 지정계좌 입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매월 말 3조1항“나”호의 납품 대금을 청구 하고 “병원”은 청구서 수령 후 15일 이내에 “위탁자”에 지급한다.

③ 위 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쌍방이 수수료 및 납품 ,대금 지급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병원과 협의 하고, 이때 청구일 기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3개월 초과 시 청구액에 대한 1항의 기준일로 (납입기일)부터 연이율 6%를 일 단위로 환산하여 연체이자를 “병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명의변경, 양도금지) ① “위탁자”는 “병원”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 없이 계약당사자의 명의 변경을 할 수 없고 수탁권을 제3자에게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 할 수 없다.

제9조 (책임) ① “병원”은 상가에서 “위탁자”에 물품을 주문할 수 있는 연

락처를 유족에게 제공한다.

② “위탁자”의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위탁자”는 음식류 공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물품공급 중 병원의 재산을 고장, 훼손하였을 경우 “병원”에게 즉시 보고 하고, 그 보수비용 등은 “위탁자”가 전액 부담 한다.

나. “위탁자”는 음식류 공급 시 수반되는 각종 식기류(밥그릇, 국그릇, 각종 찬그릇, 수저 등)를 충분히 제공하여 “병원”이 장례식장 음식류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식기류 제공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다. “위탁자”는 음식류 위탁공급에 필요한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라. “위탁자”는 식중독 등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여 본 계약조건 제 14조에 의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급원칙) ① “위탁자”는 “병원”과의 계약서에 명시된 음식류 위탁품목 납품 요구에 의거 납품하며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접견실 음식류 공급 시 본원 장례식장 내 고객이 원하는 장소 및 위치에 공급하여야 한다.

② 납품요청을 받은 음식류의 최초 납품시간은 07:00시, 당일 장례식장 이용객(상주)로부터 받는 최종 주문시간은 22:00까지로 한다. 단, 상식 등 제사상 차림에 필요한 음식류의 제공은 “병원”이 요구하는 시간에 납품하여야 한다.

③ 납품된 물품의 품질은 설익거나 변질되지 않고 먹기에 적합한 상태여야하며 보편적, 상식적으로 맛이 현저히 부당한 수준으로 판명되어 민원 발생 시 즉시 재 납품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는 “병원”의 장례식장 담당자를 통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후 납품일, 납품명, 납품내역, 금액 등이 기재된 물품공급장부를

비치하여 유족의 확인을 필한 후 “병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병원”의 요구에 응하지 못해 불합리하게 이루어진 모든 책임은 “위탁자”에게 있다.

⑥ 계약 외 품목의 발생 등 계약 외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상주 및 병원 장례식장 담당자, 원무팀장과 협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공급금액은 공급업체 판매가격으로 하고 계약된 수수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⑦ “위탁자”는 “접견실 음식류 가격표”를 각 접견실 마다 상주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⑧ “위탁자”는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하는 품목에 대하여 반드시 표기를 하여야 하며 미 이행으로 인하여 “병원”에게 금전적 피해(과태료 등)를 입히는 경우 피해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⑨ 상가의 제사상 차림에 사용된 제기류 및 “위탁자”가 음식물을 납품하면서 사용한 병원의 소유의 시설 및 물건은 병원의 재산이므로 항상 청결하게 유지·보관하여야 하며 배식실은 다음 이용객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깨끗하게 청소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 하여야 한다.

⑩ 분향소, 분향소 내실 및 접견실 청소는 공급업체 및 병원직원 각 1인이 공동으로 청소하여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 하여야 한다.

⑪ “위탁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 및 쓰레기에 대하여 자부담으로 “위탁자”의 책임 하에 관련법에 따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⑫ 한 번 납품되었던 음식물은 절대 재사용 될 수 없으며 관련법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

제11조 (보안유지) “위탁자”는 본 계약기간 동안 위탁공급 중 습득한 병원 및 장례식장 이용자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안전 및 위생관리) ① "위탁자"는 장례식장 음식류 위탁공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안전 및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종업원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식중독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지며 "병원"의 손해발생에 대하여는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병원 직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배상하여야 한다.

④ "병원"은 "위탁자"의 작업장 및 종업원에 대한 위생 및 청결상태를 검사하고 그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자"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제13조 (감독권) ① "병원"은 "위탁자"의 장례식장 음식류 위탁공급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으며 "위탁자"는 "병원"의 합당한 병원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② "병원"의 필요에 의하여 업무처리 상황에 관한 제반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보험가입) ① "위탁자"는 1사고당 5억, 1인당 1억원 이상의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 시 보험증서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금지사항)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사전협의를 되지 않은 일체의 물품공급행위

나. 고객 및 "병원" 직원과의 분쟁행위

다.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라. 유실물 습득 시 무단소유 또는 사용행위

마. 일반 상관례 및 사회통념,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일체의 행위

제16조 (계약의 해지) ① “병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위탁자”이 본 계약의 체결이나 이행에 있어서 부정을 행하였을 경우
나. “병원”으로부터 2회 이상 위생 또는 청결상태에 대한 시정 요구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다. “병원”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한 경우
라.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1일 이상 영업정지를 받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마. “위탁자”이 행정관청으로부터 년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바. 계약기간 중 식중독 발생 및 급식과 관련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의 직원 또는 “병원”의 고객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혔을 경우

사. 기타 “병원”이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행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나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병원”이 신규 위탁 공급업체와 계약 체결 시까지 “위탁자”는 급식 업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신규 업체와 계약 체결 및 위탁공급 업무 인계 후 계약은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 (비용부담 및 손해배상) ① 납품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② “위탁자”는 납품된 물품의 변질이나 부패 및 제18조에 의한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자”의 위탁공급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민·형

사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제18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 계약의 유지가 어려워진 때에는 피해를 입게 되는 계약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때 각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 (관할법원)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소송은 "병원"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0조 (기타사항) ① 본 계약에 있어 문구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의 해석에 따르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라 병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1조 (관계규정) ① 본 조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본원 및 국가계약법 등 관계규정에 의한다.

장례식장 떡류 위탁공급 특수조건

거창적십자병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례식장 떡류 위탁공급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갑”은 장례식장 떡류공급을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수탁 후 상가에 직접 납품하여 신선하고 품질 좋은 물품을 제공하여 장례식장 운영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쌍방 간 계약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공급처) 공급처는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91 거창적십자병원 장례식장(국화원)으로 한다.

제3조 (품목 및 가격) ① “을”이 위탁 공급하는 떡류의 품목과 가격은 아래 “접견실 떡류 가격”을 참고하여 적정 수준을 유지 하여야 하며 사전에 “갑”에게 단가표를 제출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가. 위탁 물품 및 판매가격 예시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판 매 금 액	비 고
기정떡	1도	도			3도/1BOX
시루떡	1도	도			3도/1BOX
인절미	1도	도			3도/1BOX
꿀떡	1도	도			3도/1BOX

※ 주문 최소단위는 2도임.

- ② 위탁공급가격은 적정하게 유지해야 하며, 공급단가 대비 폭리를 취함으로써 “갑”의 고객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갑”의 이미지를 손상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의 위탁공급품목 및 가격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 ④ (별도특약)“을”은 위탁운영 외의 본원에서 상주에게 직접 판매되는 제사상차림 제물떡의 납품이 가능하며 이때 단가는_____원/1BOX로 확정한다.

제4조 (계약기간) 2022년12월 1일 부터 2023년11월30일(1년)까지로 한다. 다만 “갑”은 2023년 위탁 계약 시까지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을”은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떡류를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 (판매대금의 수납) ① 위탁물품의 매출액 일체는 “을”이 수납하며, 매출내역은 물품공급장부를 비치하여 유족의 확인을 필한 후 병원으로부터 공급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자”는 매출액 수납에 있어 상시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현금 거래를 유도해서는 아니된다. 또한, 휴대용 카드리더기 등을 구비하여 현장 카드결제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현금으로 수납이 이루어질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6조(위탁수수료의 청구와 지급)

① “병원”은 매월 말일(또는 발인일)기준 위탁수수료를 확정하여 “위탁운영자”에게 청구하고, “위탁운영자”는 제1항의 **위탁수수료를 청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병원의 **지정계좌 입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위 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쌍방이 수수료 및 납품 ,대금 지급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병원과 협의 하고, 이때 청구일 기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3개월 초과 시 청구액에 대한 1항의 기준 일로(납입기일)부터 연이율 6%를 일 단위로 환산하여 연체이자를 “병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명의변경, 양도금지) ①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 없이 계약당사자의 명의변경 및 수탁권을 제3자에게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8조 (책임) ① “갑”은 “을”의 공급활동에 필요한 공급에 대한 연락을 제공한다.

1. 본 항의 책임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개인적인 재수사용을 요청할 경우 병원은 그에 대해 방해 할 수 없으며, 위탁업체 물품을 강매할 수 없다.

② “을”의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을”은 떡류공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물품공급 중 재산을 고장, 훼손하였을 경우 “갑”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수비용 등은 “을” 이 전액부담 한다.

2. “을”은 위탁공급에 필요한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공급원칙) ① “을”은 위탁공급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성실

히 준수하고 접견실 떡류 공급 시 고객이 원하는 장소 및 위치에 공급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안유지) “을”은 본 계약기간 동안 위탁공급 중 인지한 “갑” 및 장례식장 이용자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지시 및 통지) 본 계약에 관한 구두·서면 지시 및 통지는 본 계약서상의 주소지에 전달함으로써 “을”에게 전달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금지사항)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사전협의를 되지 않은 일체의 물품공급행위
- ② 고객 및 “갑” 직원과의 분쟁행위
- ③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 ④ 유실물 습득 시 무단소유 또는 사용행위
- ⑤ 일반 관례 및 사회통념,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일체의 행위

제13조 (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 ① 위탁품목에 대하여 유족 측의 요청으로 반품된 경우가 2회 또는 납품지연이 3회 이상 될 경우
- ② 불친절한 언행과 복장 또는 및 계약제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③ 납품한 물품이 품목설명서 기준에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처리 된 경우
- ④ 반품 요구한 물품을 신속하게 납품하여야하나 이를 3회 이상 지연 거부한 경우
- ⑤ “을”의 사정상 계약된 위탁물품을 납품 할 수 없게 된 경우(사업자등록증의 해지, 점포의 멸실 등)
- ⑥ 기타 “갑”에 불이익한 행위나 명예에 손상 및 부정한 방법이 있을 경우

제14조 (비용부담 및 손해배상) ① 납품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 ② “을”은 납품된 물품의 변질이나 부패 및 제13조에 의한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을”의 위탁공급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5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

계약의 유지가 어려워진 때에는 피해를 입게 되는 계약의 일방이 상대방 대한 의사표시로서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각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6조 (관할법원)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소송은 "갑"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7조 (기타사항) 이 계약서상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으로 상호 협의하며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합의해석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갑"과 "을"은 이 계약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날인하고 "갑"과 "을"은 이 계약서 각 1통씩을 보관한다.

장례식장 과일류 위탁공급 특수조건

거창적십자병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례식장 과일류 위탁공급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갑”은 장례식장 과일류공급을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수탁 후 상가에 직접 납품하여 신선하고 품질 좋은 물품을 제공하여 장례식장 운영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쌍방 간 계약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공급처) 공급처는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91 거창적십자병원 장례식장(국화원)으로 한다.

제3조 (품목 및 가격) ① “을”이 위탁 공급하는 과일류의 품목과 가격은 아래 “접견실 과일류 가격”을 참고하여 적정 수준을 유지 하여야 하며 사전에 “갑”에게 단가표를 제출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가. 위탁 물품 및 판매가격 예시

품 명	규 격	단 위	수량	판매금액	비 고
수박	통	통	1		
포도	5kg	kg	1		BOX
방울토마토	2kg	kg	1		BOX
밀감	5kg, 10kg	kg	1		BOX
오렌지	10kg, 20kg	kg	1		BOX

※ 계절 및 수급사정에 따라 품목이 변동 될 수 있음

② 위탁공급가격은 적정하게 유지해야 하며, 공급단가 대비 폭리를 취함으로써 “갑”의 고객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갑”의 이미지를 손상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위탁공급품목 및 가격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 (별도특약)“을”은 위탁운영 외의 본원에서 상주에게 직접 판매되는 상차림 과일 납품이 가능 하며 이때 단가는_____원/1SET로 확정한다.

제4조 (계약기간) 2022년12월01일 부터 2023년11월30일(1년)까지로 한다. 다만 “갑”은 2022년 위탁 계약 시까지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과일류를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 (판매대금의 수납) ① 위탁물품의 매출액 일체는 “을”이 수납하며, 매출내역은 물품공급장부를 비치하여 유족의 확인을 필한 후 병원으로부터 공급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자”는 매출액 수납에 있어 상시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현금 거래를 유도해서는 아니된다. 또한, 휴대용 카드리더기 등을 구비하여 현장 카드결제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현금으로 수납이 이루어질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6조(위탁수수료의 청구와 지급)

① “병원”은 매월 말일(또는 발인일)기준 위탁수수료를 확정하여 "위탁운영자"에게 청구하고, "위탁운영자"는 제1항의 **위탁수수료를 청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병원의 **지정계좌 입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위 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쌍방이 수수료 및 납품 ,대금 지급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병원과 협의 하고, 이때 청구일 기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3개월 초과 시 청구액에 대한 1항의 기준 일로(납입기일)부터 연이율 6%를 일 단위로 환산하여 연체이자를 “병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명의변경, 양도금지) ①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 없이 계약당사자의 명의변경 및 수탁권을 제3자에게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8조 (책임) ① “갑”은 “을”의 공급활동에 필요한 공급에 대한 연락을 제공한다.

1. 본 항의 책임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개인적인 재수사용을 요청할 경우 병원은 그에 대해 방해 할 수 없으며, 위탁업체 물품을 강매할 수 없다.

② “을”의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을”은 과일류공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물품공급 중 재산을 고장, 훼손하였을 경우 “갑”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수비용 등은 “을” 이 전액부담 한다.

2. “을”은 위탁공급에 필요한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공급원칙) ① “을”은 위탁공급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집견실 과일류 공급 시 고객이 원하는 장소 및 위치에 공급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안유지) “을”은 본 계약기간 동안 위탁공급 중 인지한 “갑” 및 장례식장 이용자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지시 및 통지) 본 계약에 관한 구두·서면 지시 및 통지는 본 계약서상의 주소지에 전달함으로써 “을”에게 전달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금지사항)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사전협의를 되지 않은 일체의 물품공급행위
- ② 고객 및 “갑” 직원과의 분쟁행위
- ③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 ④ 유실물 습득 시 무단소유 또는 사용행위
- ⑤ 일반 관례 및 사회통념,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일체의 행위

제13조 (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 ① 위탁품목에 대하여 유족 측의 요청으로 반품된 경우가 2회 또는 납품지연이 3회 이상 될 경우
- ② 불친절한 언행과 복장 또는 및 계약제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③ 납품한 물품이 품목설명서 기준에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처리 된 경우
- ④ 반품 요구한 물품을 신속하게 납품하여야하나 이를 3회 이상 지연 거부한 경우
- ⑤ “을”의 사정상 계약된 위탁물품을 납품 할 수 없게 된 경우(사업자등록증의 해지, 점포의 멸실 등)
- ⑥ 기타 “갑”에 불이익한 행위나 명예에 손상 및 부정한 방법이 있을 경우

제14조 (비용부담 및 손해배상) ① 납품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 ② “을”은 납품된 물품의 변질이나 부패 및 제13조에 의한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을”의 위탁공급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5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 계약의 유지가 어려워진 때에는 피해를 입게 되는 계약의 일방이 상대방 대한 의사표시로서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각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6조 (관할법원)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소송은 "갑"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7조 (기타사항) 이 계약서상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으로 상호 협의하며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합의해석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갑”과 “을”은 이 계약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날인하고 “갑”과 “을”은 이 계약서 각 1통씩을 보관한다.

장례식장 전류 위탁공급 특수조건

거창적십자병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례식장 전류 위탁공급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갑”은 장례식장 전류공급을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수탁 후 상가에 직접 납품하여 신선하고 품질 좋은 물품을 제공하여 장례식장 운영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쌍방 간 계약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공급처) 공급처는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91 거창적십자병원 장례식장(국화원)으로 한다.

제3조 (품목 및 가격) ① “을”이 위탁 공급하는 전류의 품목과 가격은 아래 “접견실 전류 가격”을 참고하여 적정 수준을 유지 하여야 하며 사전에 “갑”에게 단가표를 제출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가. 위탁 물품 및 판매가격 예시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판매금액	비 고
모듬전	4kg(산적/명태/동그랑땡)	kg			4kg/1BOX

※ 주문 최소단위는 1박스임. 계절 및 수급사정에 따라 품목이 변동 될 수 있음

② 위탁공급가격은 적정하게 유지해야 하며, 공급단가 대비 폭리를 취함으로써 “갑”의 고객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갑”의 이미지를 손상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위탁공급품목 및 가격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4조 (계약기간) 2022년12월 1일 부터 2023년11월30일(1년)까지로 한다. 다만 “갑”은 2023년 위탁 계약 시까지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류를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 (판매대금의 수납) ① 위탁물품의 매출액 일체는 “을”이 수납하며, 매출내역은 물품공급장부를 비치하여 유족의 확인을 필한 후 병원으로부터 공급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자”는 매출액 수납에 있어 상시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하

고, 현금 거래를 유도해서는 아니된다. 또한, 휴대용 카드리더기 등을 구비하여 현장 카드결제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현금으로 수납이 이루어질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6조(위탁수수료의 청구와 지급)

① “병원”은 매월 말일(또는 발인일)기준 위탁수수료를 확정하여 "위탁운영자"에게 청구하고, "위탁운영자"는 제1항의 **위탁수수료를 청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병원의 **지정계좌 입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위 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쌍방이 수수료 및 납품,대금 지급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병원과 협의 하고, 이때 청구일 기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3개월 초과 시 청구액에 대한 1항의 기준일로(납입기일)부터 연이율 6%를 일 단위로 환산하여 연체이자를 “병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명의변경, 양도금지) ①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 없이 계약당사자의 명의변경 및 수탁권을 제3자에게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8조 (책임) ① “갑”은 “을”의 공급활동에 필요한 공급에 대한 연락을 제공한다.

1. 본 항의 책임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개인적인 재수사용을 요청할 경우 병원은 그에 대해 방해 할 수 없으며, 위탁업체 물품을 강매할 수 없다.

② “을”의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을”은 전류공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물품공급 중 재산을 고장, 훼손하였을 경우 “갑”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수비용 등은 “을” 이 전액부담 한다.
2. “을”은 위탁공급에 필요한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공급원칙) ① “을”은 위탁공급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접견실 전류 공급 시 고객이 원하는 장소 및 위치에 공급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안유지) “을”은 본 계약기간 동안 위탁공급 중 인지한 “갑” 및 장례식장 이용자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지시 및 통지) 본 계약에 관한 구두·서면 지시 및 통지는 본 계약서상의 주소지에 전달함으로써 “을”에게 전달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금지사항)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사전협의를 되지 않은 일체의 물품공급행위
- ② 고객 및 “갑” 직원과의 분쟁행위
- ③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 ④ 유실물 습득 시 무단소유 또는 사용행위
- ⑤ 일반 관례 및 사회통념,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일체의 행위

제13조 (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 ① 위탁품목에 대하여 유족 측의 요청으로 반품된 경우가 2회 또는 납품지연이 3회 이상 될 경우
- ② 불친절한 언행과 복장 또는 및 계약제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③ 납품한 물품이 품목설명서 기준에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처리 된 경우
- ④ 반품 요구한 물품을 신속하게 납품하여야하나 이를 3회 이상 지연 거부한 경우
- ⑤ “을”의 사정상 계약된 위탁물품을 납품 할 수 없게 된 경우(사업자등록증의 해지, 점포의 멸실 등)
- ⑥ 기타 “갑”에 불이익한 행위나 명예에 손상 및 부정한 방법이 있을 경우

제14조 (비용부담 및 손해배상) ① 납품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② “을”은 납품된 물품의 변질이나 부패 및 제13조에 의한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을”의 위탁공급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5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 계약의 유지가 어려워진 때에는 피해를 입게 되는 계약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각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6조 (관할법원)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소송은 “갑”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7조 (기타사항) 이 계약서상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으로 상호 협의하며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합의해석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갑”과 “을”은 이 계약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날인하고 “갑”과 “을”은 이 계약서 각 1통씩을 보관한다.

장례식장 장의차량 위탁운영 특수조건

거창적십자병원 장례식장의 장의 차량 운행계약 체결에 있어 거창적십자병원을 “갑”이라 하고 계약상대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 계약사항을 준수하고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책임을 다할 것을 확약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을 거창적십자병원 장례식장의 장의 차량 위탁운영 업체로 지정함에 있어 “갑”과 “을”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2년12월01일부터 2023년11월30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은 2023년 위탁 계약 시까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장의 차량 운영을 이행해야 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을”은 계약 체결 전까지 “갑”이 정한 계약 보증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서 열거한 보증서 또는 증권 및 현금으로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다.

- ① 현금 또는 시중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 ② “갑”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 금액 이상의 정액보상 특수조항이 있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 ③ 계약보증금은 계약 보증증권 발행 또는 각서로 대체한다.

제4조(계약보증금 처리)

- ① “을”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본 공고 12조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제5조(위탁운영 목록 및 수수료)

- ① “을”은 총 **매출액(운송료 및 기타)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을”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제①항의 수수료 금액을 확정하여 “갑”에게 고지하고, “을”은 고지된 수수료를 “갑”이 지정한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③위탁운영 목록

분류	목록	규격	단위	비고
장의차량	버스	35인승	대	
	리무진	5인승	대	링컨 리무진
	리무진	2인승	대	투리스모 리무진

제6조(위탁수수료의 청구와 지급)

- ① “병원”은 매월 말일(또는 발인일)기준 위탁수수료를 확정하여 “위탁운영자”에게 청구하고, “위탁운영자”는 제1항의 위탁수수료를 청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병원의 지정계좌 입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위 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쌍방이 수수료 및 납품,대금 지급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병원과 협의 하고, 이때 청구일 기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3개월 초과 시 청구액에 대한 1항의 기준일로(납입기일)부터 연이율 6%를 일 단위로 환산하여 연체이자를 “병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운행요금)

- ① “을”이 “갑”의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유족들에게 제공하는 장의 차량의 요금(이하“운행요금”이라 한다)은 “갑”과 협약된 요금표에 의한다.
- ② 유료도료통행료, 도선료, 주차료 등 운행요금 외에 운행과정에서 부가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유족이 부담하며, 경유지가 있는 경우에는 운행거리에 따른 추가 운행요금을 “을”이 유족과 협의하여 정하고 추가운행요금내역을 “갑”의 장례식장 운영사무실에 통보한다.
- ③ 운행요금은 “을”의 종업원이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고 거래내역을 기록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을”은 특수여객 운송조합 고시에 따른 행선지별 운행요금표 또는 운행요금책자를 “갑”의 장례식장 운영사무실에 고객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준수사항)

- ① “을” 및 “을”의 종업원은 거창적십자병원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최상의 장의 차량 및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장례식장은 연중무휴 24시간 서비스하는 곳임을 감안하여 “을”의 종업원은 24시간 운영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을”은 “갑”의 장례식장에 배차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배차되는 차량은 최상의 상태(냉난방, 정비, 도색 및 청소)가 유지되어야 한다.
- ④ “을” 및 “을”의 종업원은 유족에게 고가의 차량사용을 강요하지 않으며 유족이 장의 차량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을” 및 “을”의 종업원은 정해진 운행요금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일체의 사례금을 받을 수 없다.
- ⑥ “을” 및 “을”의 종업원은 장례식장 발인 전 도착시간을 정확히 지켜야하며 편안하고 안전한 운행으로 유족에게 항상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⑦ “을” 및 “을”의 종업원은 발인시간 1시간 전에 예약된 장의 차량을 정해진 주차위치에 대기시키고 차량도착 및 대기사실을 운영사무실과 유족에게 알린 후 유족과 장지까지의 운행과정을 협의한다.

- ⑧“을”및 “을”의 종업원은 장지에서 사용할 음식이나 용품 등 유족들이 장의 차량에 적재할 물품을 확인하여 조치하고 발인 안내에 적극 협조한다.
- ⑨“을”또는 “을”의 종업원은 장례절차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엄숙하고 성실히 수행하여 고객으로부터 신뢰와 호평을 받도록 노력하며, 고객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⑩“을”또는 “을”의 종업원은 단정한 복장과 용모를 갖추고 예절바른 언행을 하여야 한다.
- ⑪“을”및 “을”의 종업원은 “갑”의 사업장내에서 장의 차량 공급 이외의 일체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 ⑫“갑”및 “갑”의 고객이 노후차량이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여 교체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을”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시 응해야 한다.
- ⑬“을”은 “갑”의 고객에게 최고의 친절한 서비스를 위해 “을”의 종업원에 대해 수시 및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갑”이 요구할 경우 교육실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⑭“을”은 장의 차량 운행내역을 날짜순으로 장부에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갑”이 운행일지의 제출을 요구할 시 이에 응해야 한다.
- ⑮“을”은 장의 차량 고객의 운행요금에 대한 할인요청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응할 수 없으며, 부득이 할인하였을 경우라도 병원에는 정가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한다.

제9조(운임료 수납)

- ①“을”은 장의 차량을 제공한 후 고객에게 직접 정해진 운행요금을 청구하여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병원은 대리수납, 알선, 상품소개 등을 실시하지 않는다.
- ② “을”은 매출액 수납에 있어 상시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카드리더기를 구비하여야 하며 고객이 카드결제를 원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현금 거래를 유도할 수 없다. 또한, 현금으로 수납이 이루어질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을”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갑”과 “갑”의 고객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장의 차량 공급)

- ①“을”이 “갑”의 장례식장에 공급하는 장의 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 관계 법령에 적법한 차량이어야 한다.
- ②“을”이 공급하는 장의 차량의 모든 종사자는 “을”의 종업원으로 본다.

제12조(사고책임)“을”은 “을”의 종업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하여 발생 즉시“갑”에게 보고토록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을”에게 있으며 또한“을”은 “갑”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3조(협약해지) “갑”은 협약기간 중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1. 제7조에 위배되는 행위가 2회 이상 사실로 판명된 경우

2. “갑”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
3. 장의 차량 운행요금을 임의로 높게 책정하여 받은 경우가 2회 이상 사실로 판명된 경우
4. “을” 또는 “을”의 종업원이 장의 차량 공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한 경우
5. “을”또는 “을”의 종업원이 고의적으로 장의 차량을 과속 또는 난폭하게 운행하여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2회 이상 적발 시, 또는 중대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6. “을”의 사정으로 인하여 장의 차량 공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갑”의 타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8. 거창적십자병원 장례식장이 장기간 영업을 중단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시 “갑”은 7일전에 미리 통보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권리양도 및 전대금지) “을”은 본 협약서 상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으며 이 협약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5조(변경사항에 대한 조치) “을”이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자본금 등 기타 상업등기사항 또는 신분상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을”은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16조(시정지시) “갑”은 수시로 고객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용 불편사항이나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을”에게 시정 지시할 수 있다.

제17조(관할법원) 본 건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8조(기타사항) 본 계약이 정당히 작성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장례식장 견어물류 구매 특수조건

거창적십자병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례식장 견어물류 구매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갑”은 장례식장 견어물류공급을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수탁하여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쌍방 간 계약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공급처) 공급처는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91 거창적십자병원 장례식장으로 한다.

제3조 (계약기간)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1년)까지로 한다. 다만 “갑”은 2023년 위탁 계약 시까지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견어물류를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보증금) “을”은 계약 체결 전까지 “갑”이 정한 계약보증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다음에서 열거한 보증서 또는 증권 및 현금으로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다.)

- ① 현금 또는 시중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 ② “갑”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 금액 이상의 정액보상 특수조항이 있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 ③ 계약보증금은 계약 보증증권 발행 또는 각서로 대체한다.

제5조 (계약보증금 처리) ① “을”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본 공고 12조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② “을”이 납부한 계약보증금(현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6조 (명의변경, 양도금지) ①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 없이 계약당사자의 명의변경을 할 수 없고 수탁권을 제3자에게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7조 (물량의 변경) 연간 구매물량은 추정량으로서 연간 납품수량의 변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갑”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조 (공급원칙)① 물품 납품은 “갑”과의 계약서에 명시된 건어물류 납품요구에 의거 납품하며 “갑”이 제시한 품목 및 기준을 정확히 준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 납품된 물품의 품질은 변질되지 않고 먹기에 적합한 상태이며 보편적, 상식적으로 일반인의 미각으로 판단할 때 맛이 현저히 부당한 수준으로 판명되어 민원 발생 시 즉시 재생산 납품하여야 한다.

③ “을”의 납품장소는 장례식장 국화원 이며, “갑”의 요구 시 “을”은 2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④ “갑”의 요구에 응하지 못해 불합리하게 이루어진 모든 책임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⑤ 계약 외 품목의 발생 등 계약 외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상주 및 국화원 실장, 총무팀장과 협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공급금액은 공급업체 판매가격으로 한다.

제9조 (보안유지) “을”은 본 계약기간 동안 위탁공급 중 인지한 “갑” 및 장례식장 이용자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지시 및 통지) 본 계약에 관한 구두·서면 지시 및 통지는 본 계약서상의 주소지에 전달함으로써 “을”에게 전달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금지사항)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사전협의를 되지 않은 일체의 물품공급행위
- ② 고객 및 “갑” 직원과의 분쟁행위
- ③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 ④ 유실물 습득 시 무단소유 또는 사용행위
- ⑤ 일반 상관례 및 사회통념,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일체의 행위

제12조 (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 ① 납품한 물품이 품목설명서 기준에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처리 된 경우
- ② 반품 요구한 물품을 신속하게 납품하여야하나 이를 3회 이상 지연하거나 거부한 경우
- ③ 불친절한 언행과 복장 또는 불량제품(방부제 및 색소첨가)납품 및 계약제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④ “을”의 사정상 계약된 위탁물품을 납품 할 수 없게 된 경우(사업자등록증의 해지, 점포의 멸실 등)
- ⑤ 기타 “갑”에 불이익한 행위나 명예에 손상 및 부정한 방법이 있을 경우

제13조 (비용부담 및 손해배상) ① 납품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② “을”은 납품된 물품의 변질이나 부패 및 제12조에 의한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을”의 위탁공급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4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 계약의 유지가 어려워진 때에는 피해를 입게 되는 계약의 일방이 상대방 대한 의사표시로서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각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 (관할법원)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소송은 "갑"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6조 (기타사항) 이 계약서상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으로 상호 협의하며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합의해석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계약품목 내역서(건어물)

(단위 : 원, 부가세포함)

품명	규격/단위	예정수량	단가	총액	비고
문어	시세규격품/마리	170			
가오리	시세규격품/마리	170			
건어포	시세규격품/마리	170			
오징어	시세규격품/마리	170			
건명태	시세규격품/마리	170			
대추	날개40~50개 묶음포장/개	170			
알밤	날개20~25개 묶음포장/개	170			
곶감	날개5개 묶음포장/개	170			
유과	날개4개 묶음포장/개	170			
약과	날개10개 묶음포장/개	170			
합계		1,700			

* 예정수량은 우리병원 장례식장 수급 및 상주 주문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첨 1]

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찰개요	입찰공고(지명) 번호	제20221122002-00호	입찰공고기간	2022.11.22. ~ 2022.11.28.
	입찰건명	2022~2023년도 거창적십자병원 장례식장 음식류 위탁 및 구매 입찰		
입찰보증금	납 부	견적 입찰로 입찰 보증금을 면제함 단, 입찰 참가 후 계약 불이행 시 향후 2년 동안 우리 사 입찰 참가가 제한됩니다.		
대사 리용 인인 ·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대리인 없으면 생략 가능)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성명 :	생년월일 :	사용 인감	㉠
<p>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사의 일반(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대한적십자사에서 정한 물품구매(공사·용역)전자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p> <p>붙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4. 입찰보증 각서 1부 5. 기타 입찰 참가 등록 서류</p> <p style="text-align: center;">2022. 11. .</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 (인감인)</p> <p><u>거창적십자병원 귀중</u></p>				
구매담당 직원 직·성명 :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9. 23.>

견 적 서						
	공고번호	제20221122002-00호	입찰일자	2022. 11. .		
입찰내용	건명	2022~2023년도 거창적십자병원 장례식장 식사 및 수육 입찰 공고				
	세부내역	구분	규격	수수료율(%)	비고	
		식사류	- 밥, 국 - 육개장 - 시래기국			
		사태수육 (삼겹/목살/발목살)	600g			
		신산제	규격서 참조			
		개토제	규격서 참조			
		평토제	규격서 참조			
		노제	규격서 참조			
		반혼제	규격서 참조			
		삼우제	규격서 참조			
		화장제	규격서 참조			
		탈상제	규격서 참조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p>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물품구매(제조)·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물품구매(제조)·용역 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물품규격서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완성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견적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2. 11. .</p> <p style="text-align: right;">입찰자 (인)</p> <p>대한적십자사 거창적십자병원 재무원 귀하</p>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9. 23.>

견 적 서

입찰내용	공고번호	제20221122002-00호	입찰일자	2022. 11. .		
	건명	2022~2023년도 거창적십자병원 장례식장 떡류 입찰 공고				
	입찰총 수수료율	%				
	세부내역	구	분	규격	수수료율(%)	비고
			기정떡	1되		
		시루떡	1되			
		인절미	1되			
	꿀떡	1되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p>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물품구매(제조)·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물품구매(제조)·용역 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물품규격서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완성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견적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2. 11. .</p> <p style="text-align: right;">입찰자 (인)</p> <p>대한적십자사 거창적십자병원 재무원 귀하</p>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9. 23.>

견 적 서

입찰내용	공고번호	제20221122002-00호	입찰일자	2022. 11. .	
	건명	2022~2023년도 거창적십자병원 장례식장 과일류 입찰 공고			
	입찰총수수료율	%			
	세부내역	구분	규격	수수료율(%)	비고
		수박	통		
포도		5kg			
망울토마토		2kg			
밀감		5kg,10kg			
오렌지	10kg,20kg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p>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물품구매(제조)·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물품구매(제조)·용역 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물품규격서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완성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견적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2. 11. .</p> <p style="text-align: right;">입찰자 (인)</p> <p>대한적십자사 거창적십자병원 재무원 귀하</p>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9. 23.>

견 적 서

입찰내용	공고번호	제20221122002-00호	입찰일자	2022. 11. . .	
	건명	2022~2023년도 거창적십자병원 장례식장 <u>건어물류</u> 입찰 공고			
	입찰총수수료율	%			
	세부내역	구분	규격	수수료율(%)	비고
	모듬전	4kg (산적/명태/동그랑땡)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p>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물품구매(제조)·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물품구매(제조)·용역 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물품규격서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완성 납품할 것을 약속하며 견적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2. 11. . .</p> <p style="text-align: right;">입찰자 (인)</p> <p>대한적십자사 거창적십자병원 재무원 귀하</p>					

견 적 서

입찰내용	공고번호	제20221122002-00호	입찰일자	2022. 11. .	
	건명	2022~2023년도 거창적십자병원 장례식장_____입찰 공고			
	입찰총수수료율	%			
	세부내역	구분	규격	수수료율(%)	비고
	버 스	35인승			
	리 무 진	5인승 (링컨리무진)			
	리 무 진	2인승 (투리스모리무진)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p>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물품구매(제조)·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물품구매(제조)·용역 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물품규격서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완성 납품할 것을 약속하며 견적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2. 11. .</p> <p style="text-align: right;">입찰자 (인)</p> <p>대한적십자사 거창적십자병원 재무원 귀하</p>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9. 23.>

견 적 서					
입찰내용	공고번호	제20221122002-00호	입찰일자	2022. 11. .	
	건명	2022~2023년도 거창적십자병원 장례식장 <u>건어물류</u> 입찰 공고			
	합계금액	일금			원
	세부내역	구분	규격	단가	비고
		문어	시세규격품		
		가오리	시세규격품		
		건어포	시세규격품		
		오징어	시세규격품		
		건명태	시세규격품		
		대추	날개40~50개 묶음포장		
		알밤	날개20~25개 묶음포장		
		꽃감	날개5개 묶음포장		
유과		날개4개 묶음포장			
약과		날개10개 묶음포장			
합계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p>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물품구매(제조)·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물품구매(제조)·용역 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물품규격서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완성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견적서를 제출합니다.</p>					
<p>2022. 11. .</p>					
<p>입찰자</p>			<p>(인)</p>		
<p>대한적십자사 거창적십자병원 재무원 귀하</p>					

